

# 석면작업 후 농도측정 결과 보고서

군자중학교 급식소동 및 체육관동 석면해체공사



주식회사 아스랩

Tel: 031-969-5482 Fax: 031-622-9942

##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

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		안	산-20200225
신고현장	현장명(공사명・작 군자중학교 급식		전화번호 
	소재지 경기도 시흥스 군	·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	
신 고 인	( ) = 1 1 2 1 2 1 2 1 2 1		고용노동부 등록번호 4571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석면해체・제거업자)

㈜더본이앤씨

(서명 또는 인)

중부지방고용노동청안산지청장 귀하

첨부서류

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## 석면농도측정 결과표

#### 1. 작업장 개요

	현장명(공사명ㆍ작입	[명): 균	-자중학교 급식소동 및	체육관동 석면해	체공사
ᄎᄶᅁᆰᅚ	현장 소재지 :		흥스 군자봉길 299 (거드	고동, 군자중학교)	
그 9 기 되 시	석면해체・제거작업	신고번호 : <sub>인</sub>	산-20200225	업자명(상호):	㈜더본이앤씨
	전화번호 :	031-996-4	746	대표자 :	이 승 규

2. 측정기간

2021.01.14~2021.01.15

#### **3. 측정자**(분석자 포함)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정 판 세	산업위생관리기사	19201011865H	측정자
김 태 우	화학공학과 졸업		분석자

#### 4. 측정결과

측정위치	측정시간(분)	유량(l/min)	측정농도(개/때³)	초과여부
첨부 서식1	첨부 서식1	첨부 서식1	첨부 서식1	첨부 서식1

#### **5. 측정 위치도**(측정 장소)

첨부 서식2

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18일

주식회사 아스랩



석면해체 • 제거업자

㈜더본이앤씨

귀하

## 첨부서식1 측정 결과

현 장 명 : 군자중학교 급식소동 및 체육관동 석면해체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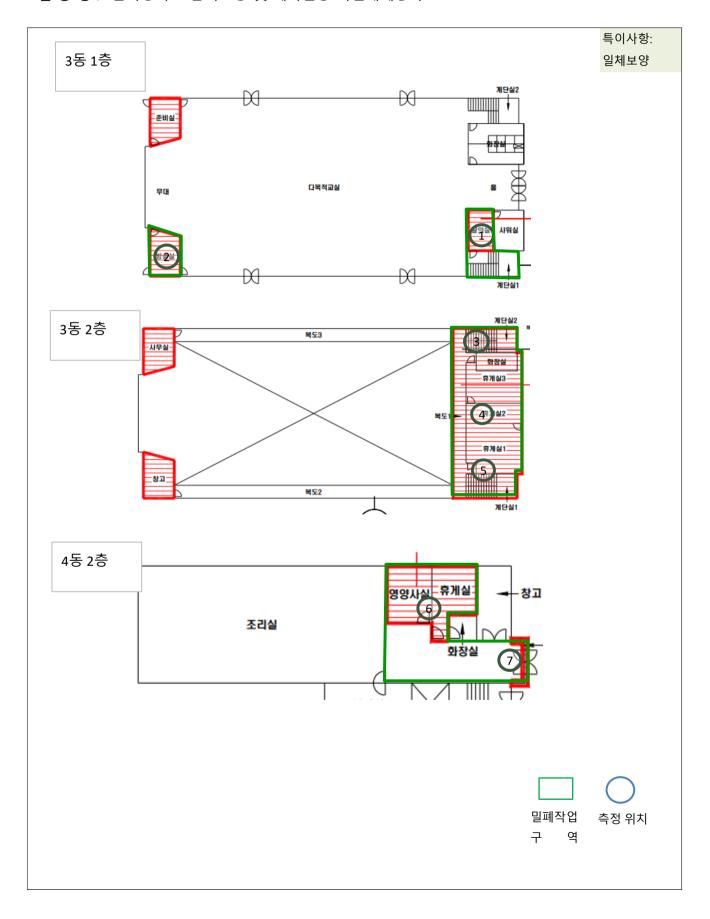
측정일시: 2021.01.14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정 판 세	산업위생관리기사	19201011865H	측정자
김 태 우	화학공학	· 라과 졸업	분석자

측정위치	측정번호	측정시간(분)	유량( <b>l</b> /min)	측정농도(개/m³)	초과여부
지상3동 1층	1	100	10.4	0.002	미만
지상3동 1층	2	100	10.2	0.003	미만
지상3동 2층	3	100	10.1	0.005	미만
지상3동 2층	4	100	10.0	0.004	미만
지상3동 2층	5	100	10.3	0.005	미만
지상4동 2층	6	100	10.2	0.005	미만
지상4동 2층	7	100	10.4	0.003	미만
공시료 #1				0.00	

## 첨부서식2 측정 위치도 (측정 장소)

현 장 명 : 군자중학교 급식소동 및 체육관동 석면해체공사



## 첨부서식1 측정 결과

현 장 명 : 군자중학교 급식소동 및 체육관동 석면해체공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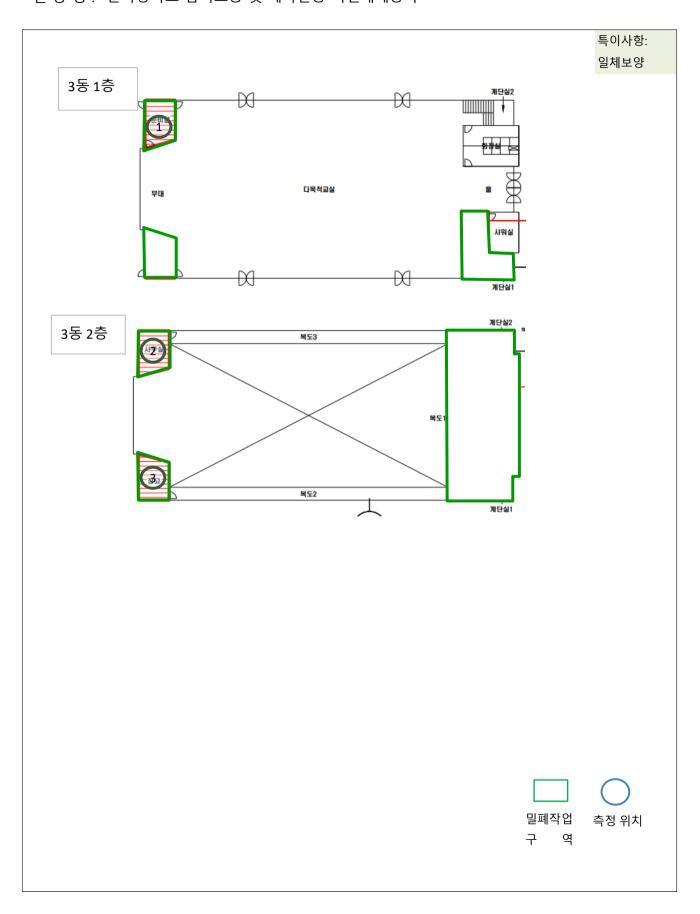
측정일시: 2021.01.15

성명	자격종목 및 등급	자격등록번호	비고
 정 판 세	산업위생관리기사	19201011865H	측정자
김 태 우	화학공학	학과 졸업	분석자

측정위치	측정번호	측정시간(분)	유량( <b>l</b> /min)	측정농도(개/때³)	초과여부
지상3동 1층	1	100	10.2	0.004	미만
지상3동 2층	2	100	10.2	0.003	미만
지상3동 2층	3	100	10.3	0.004	미만
공시료 #1				0.00	

## 첨부서식2 측정 위치도 (측정 장소)

현 장 명 : 군자중학교 급식소동 및 체육관동 석면해체공사





#### 첨부 서식 3 지정서

제2020-120017호

####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(주)아스랩			
소 재 지	(10465) 경기 고	(10465) 경기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200-5 421-11 2층		
대표자성명	홍미현	홍미현	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 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
	관 할 지 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		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		

- ※ 준수사항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- 2.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※ "지정사항" 및 "준수사항"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 제합니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0. 9. 21.

